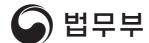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0891-01

# 2016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 발 간 사

2016년 7월 1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시행됨으로써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로펌들과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법률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7월 현재 120명의 외국법자문사와 26개의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이후에는 더욱 많은 외국 변호사 및 로펌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안에 따라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고용을 통해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법자문사로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 변호사의 일시입국을 통한 국제 중재 대리를 허용하여 국내 국제중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내외 변호사 및 관련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6 개정 외국법자무사법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설서에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와 법무부의 연구 자료 등을 기초로 조문별 주요 내용, 규정 배경, 입법례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해설서가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신 신희택 개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해설서 발간을 위해 수고한 법무실 국제법무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6. 8.

世界中分관 71 31-3

제1편	개정 배경 및 경과	1
1.	개정 배경	3
2.	개정 경과	3
제2편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주요 내용	5
	합작법무법인 설립 허용	
2.	합작참여자 자격 설정	7
3.	합작참여자 지분 비율 및 의결권 행사 등 제한	7
4.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	8
5.	합작법무법인 내 인적 구성	8
6.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에 의한 국제중재사건 대리 허용	8
제3편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조문별 해설	9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중재사건 대리(제24조의2) 1	
	설립(제35조의2) 1	
	설립 절차(제35조의3) 1	
	정관 기재사항(제35조의4) 1	
	등기(제35조의5)2	
6.	명칭(제35조의6)2	3
	합작법무법인의 구성(제35조의7) 2	
	합작참여자(제35조의8) 2	
9.	합작참여자의 가입(제35조의9)	2
10.	합작참여자의 탈퇴(제35조의10)	3
11.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 3	6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2) 3	
13.	대표(제35조의13)	1
14.	사무직원(제35조의14) 4	3

15.	사무소(제35조의15)	45
16.	지분(제35조의16)	48
17.	의결권 행사(제35조의17)	51
18.	수익분배(제35조의18)	52
19.	업무범위(제35조의19)	54
20.	업무집행방법(제35조의20)	59
21.	부당관여금지(제35조의21)	63
22.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제한(제35조의22)	65
23.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제35조의23)	67
24.	장부의 작성·보관(제35조의24) ······	69
	수임 제한(제35조의25)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제35조의26)	
	보고의무(제35조의27)	
	손해배상책임(제35조의28)	
	인가 취소(제35조의29)	
	해산(제35조의30)	
	인가 등 통지(제35조의31)	
	준용 규정(제35조의32)	
	다른 법률의 준용(제35조의33)	
34.	타법개정(부칙 제2조)	87
n1		
	부록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1	
	한·EU FTA 법률서비스 양허안(국·영문)1	
	한·미 FTA 법률서비스 유보안(국·영문) 14	
	변호사법 1:	
6.	변호사법 시행령2	15

# 제 1 편

#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배경 및 경과

# 1. 개정 배경

한-EU, 한-미, 한-호, 한-캐, 한-베, 한-콜롬비아 FTA 등에 따라 우리나라는 FTA 상대국에 법률시장을 3단계로 개방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먼저 개방 시기가 도래하는 EU에 대한 3단계 개방을 위하여 「외국 법자문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EU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약속한 미국('17. 3. 15.), 베트남('18. 12. 20.), 호주('19. 12. 12.), 캐나다('20. 1. 1.), 콜롬비아('21. 7. 15.)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16. 7. 현재)

# 2. 개정 경과

# 가. 「외국법자문사법」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외국법자문사법」개정을 위해 법무부는 '14. 5. 학계, 재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위원장서울대 신희택 교수)를 구성하고 개정작업을 시작하였다.

개정위원회는 대한변협, 외국법자문사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13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성안하였다.

개정안 성안 후 정부 입법 절차에 따라 '15. 3.부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 3. 2. 개정법을 공포하였다('16. 7. 1. 시행).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합작참여자의 업력 요건, 합작법무법인 대표의 경력 요건,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 수 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 등 3가지 사항을 권고하였고, 이를 개정안에 모두 반영하였다.

#### << 7. 10.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가지 개선권고 사항 >>

- ▶ 국내·외 합작참여자(로펌) 업력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
- ▶ 합작법무법인 대표의 경력 요건 7년 이상 규정 삭제(대표는 선임변호사 내지 선임외국법자문사여야 하므로 5년 이상 경력은 필요)
- ▶ 선임외국법자문사 수가 선임변호사 수를 넘지 않도록 정한 규정과 관련 하여, 선임변호사 퇴사시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경과 규정 도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2차례 회부되어, 장시간의 논의 끝에 정부안의 주요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본회의 결과 재석의원 195명 중 190명 찬성, 5명 기권, 0명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 나.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외국법자문사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은 '16. 2.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6. 6. 28. 공포되었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과 같은 날 공포되었다.

# 제 2 편

# 개정외국법자문사법 주요 내용

# 1. 합작법무법인 설립 허용(제35조의2)

국내 합작참여자(국내 로펌)와 외국 합작참여자(외국 로펌)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외국 합작참여자의 본점 사무소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상 FTA 상대국(미국, EU, 호주, 캐나다, 베트남, 콜롬비아 / 2016. 7. 현재)에 소재할 것을 요구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 2. 합작참여자 자격 설정(제35조의8)

외국 합작참여자가 급조된 국내 합작참여자를 이용하여 명목상으로는 합작법 무법인이나 실질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합작참여 자 모두 3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5인 이상의 변호사 를 보유하고 이 중 최소 3인 이상이 해당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등을 합작 참여 요건으로 정하였다.

# 3. 국내·외 합작참여자간 지분비율, 의결권 행사 등 제한 (제35조의16, 제35조의17, 제35조의18)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권한을 명시한 한-미, 한-EU FTA 등에 따라 외국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비율 제한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작참여자의 의결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 4.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제35조의19)

선진 법률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합작법무법인의 국내 변호사 고용 및국내법 사무를 허용하면서도 송무, 對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관련 업무및 친족·상속 등 외국 로펌의 진출로 인한 실익이 적은 분야 및 노무, 지식재산권 등 미개방 분야의 국내법 사무를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5. 합작법무법인 내 인적 구성 (제35조의11, 제35조의12, 제35조의13)

각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인 2인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합 작법무법인에 두도록 하는 한편,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소속 외국법자문사 수 가 각각 선임·소속 변호사 수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 업무집행, 대표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책임자급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합작법무법인의 구성원은 합작참여자인 국내·외 로펌인 점을 고려하여 '선임'이라는 새로운 용어 사용)

# 6. 미등록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한 국제중재 대리 허용 (제24조의2 제1항)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자격이 외국법자문사로 제한될 경우 중재계약 당사자의 대리인 선택 폭이 좁아지게 되어 우리나라를 중재지로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한 국제 중재사건의 사무처리를 허용하였다.

단, 외국법자문사 제도가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중재 대리를 위한 외국변호사의 국내 체류 기간을 연 90일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 제 3 편

# 개정외국법자문사법 조문별 해설

# 1.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제24조의2)

# 제24조의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 ①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4조제3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외국변호사는 제24조제3호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1년에 90일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체류 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 규정 배경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자격이 외국법자문사로 제한될 경우 중재계약 당사자의 대리인 선택 폭이 좁아지게 되어 우리나라를 중재지로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놓고 우리와 경쟁하는 아시아 주요국 모두 일시입국을 통한 국제중재사건 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중재사건 유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한 국제중재사건의 사무처리를 허용하였다.

# 나. 입법례

# 홍콩 Arbitration Ordinance, Section 63

Section 44 (Penalty for unlawfully practising as a barrister or notary public), section 45 (Unqualified person not to act as solicitor) and section 47 (Unqualified person not to prepare certain instruments, etc.) of the Legal Practitioners Ordinance (Cap 159) do not apply to -

- (a) arbitral proceedings;
- (b) the giving of advice and the preparation of documents for the purposes of

arbitral proceedings; or

- (c) any other thing done in relation to arbitral proceedings, except where it is done in connection with court proceedings -
- (i) arising ou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or
- (ii) arising in the course of, or resulting from, arbitral proceedings

#### 일본 외국법사무변호사법 제58조의2

외국변호사(외국법사무변호사인 자를 제외한다)로서 외국에서 해당 외국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기초로 하여 법률사무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내에서 고용되어 외국법에 관한 지식에 기초해 노무의 제공을 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는 변호사법 제7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외국에서 의뢰받은 또는 수임한 국제중재사건의 절차에 관한 대리를 행할 수 있다. 단,제52조 제2호 또는 동법 제57도 제2호에 규정하는 처분에 상당하는 외국의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해 업무를 정지당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주요 내용

기존에 외국법자문사에게만 허용되던 국제중재사건 대리를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변호사에게도 허용하였다. 다만, 외국법자문사 제도가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중재 대리를 위한 외국변호사의 국내 체류 기간을 연 90일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한 법률사무를 허용하는 호주, 홍콩 등도 일시입국 기간을 연 90일로 제한하고 있다.

# 2. 설립(제35조의2)

#### 제35조의2(설립)

- 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 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외국 합작참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 소재지 국가를 기준으 로 제1항의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을 정한다.

#### 가. 규정 배경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라 허용되는 국내 로펌-외국 로펌간 합작법무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항을 신설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한 · 미 FTA(3단계 개방안)

2.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u>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u> <u>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u>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 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2(c)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US law firms to establish,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joint venture firms with Korean law firms. Korea may impose restrictions on the proportion of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s of the joint venture firms. For greater certainty, joint ventures may,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employ Korean-licensed lawyers as partners or associates.

# 다. 입법례

#### 싱가포르 Legal Profession (International Services) Rules 2008

- 4. (1) A Joint Law Venture may be constituted by
  - (a) a partnership between a <u>foreign law practice and a Singapore law</u> practice; or
  - (b) the incorporation of a company under Singapore law, with the shares in the company being held by a <u>foreign law practice</u> and a <u>Singapore law practice</u> or by their respective nominees
  - (2) The following conditions shall apply to an application for a Joint Law Venture licence under section 130B(1) of the Act
    - (b) the foreign law practice must have 5 or more foreign lawyers resident in Singapore, who must each have at least 5 years of relevant legal expertise and experience in any of the areas of legal prac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 (d) **the Singapore law practice** must <u>have 5 or more solicitors</u>, who must each have at least 5 years of relevant legal expertise and experience in any of the areas of legal prac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 라. 주요 내용

# 1) 제1항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약속한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한-베트남 FTA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이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당사국에 소재한 로 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국내 합작참여자가 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등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기타 조직은 합작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외국 합작참여자는 외국 로펌의 본점사무소이며 법률시장 1단계 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로펌의 대표사무소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합작 주체가 될 수 없다.

## 2) 제2항

제2항은 여러 나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로펌이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약속한 국가에 기반을 둔 로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합작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작 참여가 가능한 외국 로펌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하였다.

제2항에 따라, 합작 참여가 가능한 외국 로펌은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 사무소가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2016. 7. 현재 EU, 2017. 3. 15. 미국, 2018. 12. 20. 베트남, 2019. 12. 12. 호주, 2020. 1. 1. 캐나다, 2021. 7. 15. 콜롬비아에도 적용 예정)에 소재한 로펌으로 제한된다.

# 3. 설립 절차(제35조의3)

####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합작참여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합작참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일부터 5년으로 한다.
- ④ 설립인가의 갱신 신청은 제3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인가 신청 절차, 인가 유효기간 및 인가 갱신 규정을 신설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별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도 같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11조(등록증명서 등)

-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법자문사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 제2항의 원자격국을 외국법자문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명부에 등록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등록의 갱신 신청은 제2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 다. 입법례

# (싱가포르) Legal Profession (International Services) Rules

- 37. (1) The following <u>licenses and approval</u> are prescribe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30P(2) of the Act and <u>shall remain valid until they are</u> suspended, revoked or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Part IXA of the Act
  - (a) Joint Law Venture Licence;
  - (b) Formal Law Alliance licence;
  - (c) foreign law practice licence;
  - (d) approval under 130L(1) or (6) of the Act
  - (2) The following <u>licences and registrations</u> are prescribe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30P(3) of the Act and shall, unless they are sooner suspended, revoked or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Part IXA of the Act, <u>be valid</u> for such period as the Attorney General may specify
    - (a) Qualifying Foreign Law Practice licence
    - (d) representative office licence
    - (c) 이하 외국 변호사 등록
    - ※ QFLP에 대해서는 통상 유효기간 5년의 면허 발급

# 라. 주요 내용

# 1) 제1항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에 있어서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의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 2) 제2항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신청인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설립인가 신청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8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법무부장관은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

# 3) 제3항

합작법무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담보할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가 갱신 규정을 신설하였다. 외국법자문사는 5년 마다 등록 갱신을 하고 있으나, 합 작법무법인은 5년 마다 인가 갱신을 하도록 하여 차이를 두고 있다.

합작법무법인 설립요건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5년 마다 심사할 예정이다.

# 4) 제4항

합작법무법인 재인가 심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재등록 심사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유효기간 만료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로 합작법무법인인가의 갱신 신청 기간을 정하였다.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을 받으려면설립인가 갱신신청서에 개정「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8제1항 각 호 및 제2항각 호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제1항).

# 4. 정관 기재사항(제35조의4)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 기준 및 지분 비율
- 4. 합작참여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합작참여자 회의에 관한 사항
- 6.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 7.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 8.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가. 규정 배경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합작법무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관기재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다. 주요 내용

제2호는 합작참여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합작참여자의 경우에는 외국 합작참여자를 특정하기 위한 이에 준하는 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제5호의 "합작참여자 회의"는 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하는 것으로 법 제35조의13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다.

제6호는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sup>1)</sup>의 성명·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를 정관 기재 사항으로 정하였다. 선임 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경우 변호사법상 구성원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선 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항상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표만 정관기재사항으로 하거나, 동 사항을 등기 사항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외국법자문사법」제35 조의11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자격과 합작법무법인 내 비율을 제 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 심사를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관 기재 사항에 포함하였다.

<sup>1) &</sup>quot;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제35조의11 해설 참조

# 5. 등기(제35조의5)

#### 제35조의5(등기)

-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 4.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 5.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 6.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8. 설립인가 연월일
- ③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의 성립 요건인 합작법무법인 등기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43조 (등기)

-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 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22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7. 설립인가 연월일
-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다. 주요 내용

# 1) 제1항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정관 및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제2항). 합작법무법인이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합작법무법인 설립 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제4항).

# 2) 제3항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서 한다.

# 6. 명칭(제35조의6)

#### 제35조의6(명칭)

- ① 합작법무법인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통용되는 약칭을 포함한다)을 병기하고, 그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합작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가. 규정 배경

소비자에게 합작법무법인의 지위 및 합작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명칭을 통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합작참여자 명칭을 모두 병기하고 합작법무법인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44조 (명칭)

-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27조 (자격의 표시)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식 외의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 다. 입법례

#### 싱가포르 Guidance Note for Applicants - Joint Law Ventures

9. A JLV shall practis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unless otherwise modified by the Attorney-General:

#### (a) Structure

(i) Name and identity of the JLV-The Name of the JLV and its letterhead and logo should reflect its JLV status and contain both the name of the constituent SLP and that of the constituent FLP. The JLV must clearly indicate in all its correspondence and other communications with third parties that the entity corresponding or communicating with the third party is a JLV.

#### 일본 외국법사무변호사법 제49조의4

제49조의 4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외국법 공동사업에 관련된 신고를 한 외국법사무변호사는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해 그 사무소의 명칭 중에 '외국법 공동사업'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무소의 명칭에 외국법 공동사업을 영위한다는 취지 및 해당 외국법 공동사업에 관련된 변호사 또는 변호사 법인의 사무소의 명칭을 부기하여야 한다.

# 라. 주요 내용

# 1) 제1항

합작참여자의 명칭을 병기하게 할 경우 너무 길고 복잡한 명칭이 될 수 있으므로 합작참여자의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자율에 맡길 경우외국 로펌 명칭만을 사용하게 되어 법률서비스 소비자에게 합작법무법인의 지위와 합작 주체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합작참여자의 명칭을 병기하고,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각 합작참여자의 통용되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합작법무법인의 명칭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합작참여자의 명칭을 병기하므로 합작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합작법무법 인은 당연히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 2) 제2항

법무법인의 명칭에 관한 변호사법 제44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7. 합작법무법인의 구성(제35조의7)

#### 제35조의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 ①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한다.
- ②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 ③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작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가, 규정 배경

2개 이상의 국내·외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 였다.

아울러, 국내 또는 해외 로펌의 탈퇴 즉시 합작법무법인이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에 합작참여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45조 (구성원)

- ① 법무법인의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법원조직법」제4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 던 자이어야 한다.
-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다. 주요 내용

# 1) 제1항. 제2항

국내·외 로펌 1개 이상이 함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세무에 특화된 국내 로펌 A와 금융에 특화된 국내 로펌 B 그리고 회사법에 특화된 외국 로펌 C가 함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다만, 1개 로펌이 복수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다.

# 2) 제3항

합작참여자의 탈퇴로 인해 합작법무법인이 최소 1개의 국내 합작참여자 및 외국 합작참여자를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도록 하였다.

즉, 위의 사례에서 A 로펌 또는 B 로펌 중 하나가 탈퇴한 경우 합작법무법인은 1개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의 외국합작참여자를 보유하게 되므로 합작참여자를 보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C 로펌이 탈퇴한 경우에는 외국 합작참여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므로 3개월 이내에 외국 합작참여자를 보충하여야 한다.<sup>2)</sup> 보충 기한(3개월)은 변호 사법상 법무법인의 구성원 보충 기간을 참조하여 규정하였다.

국내 또는 해외 합작참여자가 부재하는 경우를 해산 사유로 규정할 경우 해산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절차 진행의 부담 등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작참여자의 탈퇴 및 보충에 따라 국내 합작참여자나 외국 합작참여자가 부재한 합작법무법인이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sup>2)</sup> 합작참여자의 가입 및 탈퇴는 제35조의9 및 제35조의10 해설 참조

# 8. 합작참여자(제35조의8)

### 제35조의8(합작참여자)

-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 1.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 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5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 3. 주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 가. 최근 5년 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최근 5년 간 그 대표가 국내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 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를 받은 경우로서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국내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 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 2.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5명 이상의 외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외국 합작 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 가. 규정 배경

급조되었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외국 로펌이 합작에 참여하는 경우 법률시장 개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형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을 급조하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합작법무법인을 자회사처럼 운영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합작참여 요건을 규정하였다.

# 나. 입법례

### 싱가포르 Legal Profession(International Services) Rules 2008

[합작법무법인의 전문성 요건]

- 4(2) The following conditions shall apply to an application for a Joint Law Venture licence under section 130B(1) of the Act:
  - (a) the foreign law practice and the Singapore law practice must have relevant legal expertise and experience which are acceptable to the Attorney-General in any of the following areas of legal practice:
    - (i) banking law;
    - (ii) finance law;
    - (iii) corporate law;
    - (iv) arbitration;
    - (v) intellectual property law;
    - (vi) maritime law;
    - (vii) any other areas of legal practice that facilitate or assist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Singapore economy

# [합작참여자의 지분파트너 보유 요건]

4(2)(b) the foreign law practice must have 5 or more foreign lawyers resident in Singapore, who must each have at least 5 years of relevant legal expertise and experience in any of the areas of legal prac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 4(2)(c) at least 2 of the foreign lawye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b) must be equity partners in the foreign law practice or, in the case of a foreign law practice constituted as a corporation, directors of such corporation;
- 4(2)(d) the Singapore law practice must have 5 or more solicitors, who must each have at least 5 years of relevant legal expertise and experience in any of the areas of legal prac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 4(2)(e) at least 2 of the solicito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d) must be equity partners in the Singapore law practice or, in the case of a law corporation, directors of such law corporation

# 다. 주요 내용

# 1) 제1항 제1호

외국 로펌이 급조된 국내 로펌을 이용하여 명목상으로는 합작법무법인이나 실 질은 외국 로펌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성 있는 로 펌이 합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3년의 업력을 합작참여 요건으로 부과하였다.

# 2) 제1항 제2호

국내·외 로펌이 대등한 관계에서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각 합작참 여자가 최소 5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규모있는 로펌일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법무법인에 대해 3인 이상의 구성원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 변호사법(제45조)과 균형을 고려하여 국내·외 합작참여자가 보유한 5인 이상의 변호사 중 3인 이상은 구성원일 것을 요구하였다.

# 3) 제1항 제4호

합작참여 결격 요건으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을 결격 요건으로 하지 않고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여 과도한 제한이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내 합작참여자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른 1년 이하의 정직에 상당하는 징계, 과태료 또는 견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나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았다.

국내 합작참여자의 대표의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1년 이하의 정직, 과태로 또는 견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로서 그 징계의 원인이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았다.

## 4) 제2항

외국 합작참여자의 경우에도 3년의 업력 요건 등 국내 합작참여자와 유사한 정도의 요건을 부과하되, 징계 또는 형사처벌로 인한 결격 요건에 대하여는 외 국 로펌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범위 및 처벌 원인행위가 매우 다양할 것 이므로 우리나라 변호사법 위반에 상당하는 외국법 위반의 경우로 결격 사유를 제한하였다.

# 9. 합작참여자의 가입(제35조의9)

#### 제35조의9(합작참여자의 가입)

- ① 합작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법무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새로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하게 되는 합작참여자는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의 추가 가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나. 주요 내용

합작참여자의 추가 가입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요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합작참여자의 가입은 정관 변경사항이므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합작법무법인의 본질에 변동이 생기는 중요한 변화인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 사항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10. 합작참여자의 탈퇴(제35조의10)

#### 제35조의10(합작참여자의 탈퇴)

- ① 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 야 한다.
- ②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 1. 「변호사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
- 2.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해산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2.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 규정 배경

합작참여자의 합작법무법인 탈퇴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하다.
  - 1. 사망한 경우
  -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3.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법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 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 다. 주요 내용

당초 합작참여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합작참여자의 가입· 탈퇴를 허용하지 않고 해산 사유로 의율하는 안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해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점, 합작참여자의 변동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탈퇴를 허용하게 되었다.

### 1) 제1항

제1항은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구성원 탈퇴 조항(제46조)을 참조하여 합작참여자가 임의 탈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5조의33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에 준용하는 상법상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권(제217조) 조항을 참조하여 탈퇴 6월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 2) 제2항

당연 탈퇴 사유는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구성원의 당연 탈퇴 사유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법무법인 구성원의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합작참여자의 해산을 규정하였고,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변호사법과 동일하게 당연 탈퇴 사유 로 규정하였다.

# 3) 제3항

국내 합작참여자의 당연 탈퇴 사유에 준하는 사유를 외국 합작참여자의 당연 탈퇴사유로 규정하였다.

# 11.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

## 제35조의11(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 ① 「변호사법」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에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2명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둔다.
- 1.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 2. 통산하여 5년 이상「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에 있었거나,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2년 이 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 3.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일 것
- ②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외국법자문사 수는 선임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 ③ 제35조의15제3항,「변호사법」제21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같은 법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할 수 있다.
-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 문사 인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구성원(partner)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책임자급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의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45조 (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 한미, 한EU FTA 법률서비스 유보(양허)안(3단계 개방안)

- 2.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u>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u> 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 2(c)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US law firms to establish,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joint venture firms with Korean law firms. Korea may impose restrictions on the proportion of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s of the joint venture firms. For greater certainty, joint ventures may,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employ Korean-licensed lawyers as partners or associates.

## 다. 주요 내용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책임자급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채택되었다.

# 1) 제1항

제1항은 합작법무법인에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를 각 2인 이상 두도록 하고, 제1~3호에서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규정하였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에 대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과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최소 1명이 5년 이상의 경력이 필

요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합작법무법인의 경우 합작참여 로펌에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5인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법률시 장 개방의 취지에 비추어 경력있는 외국 변호사가 일정 수 이상 합작법무법인에 근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에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다.

제1항 제3호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임외국법자 문사의 원자격국을 3단계 개방국으로 제한하였다.

### 2) 제3항

제3항은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직을 금지할 경우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의 구성원과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를 별도로 보유해야 하는데, 이 경우 중간 규모의 국내로펌 중에 합작요건을 충족하는 로펌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겸직을 허용하여 합작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형 로펌의 합작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겸직을 하기 위하여는 국내 합작참여자와 외국 합작참여자가 동일하게

# 3) 제4항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선임변호사의 퇴사시 선임외국법자문사도 동반 퇴사해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선임변호사를 보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 12.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2)

## 제35조의12(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 ① 「변호사법」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아닌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이어야 한다.
- ③ 합작법무법인 내 소속외국법자문사 수는 소속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에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두기 위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한미, 한EU FTA 법률서비스 유보(양허)안(3단계 개방안)

- 2.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u>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u> 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 2(c)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US law firms to establish,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joint venture firms with Korean law firms. Korea may impose restrictions on the proportion of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s of the joint venture firms. For greater certainty, joint ventures may,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employ Korean-licensed lawyers as partners or associates.

#### 40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 다. 주요 내용

제1항은 합작법무법인이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항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 관련 제한을 소속외국법자문사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개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소속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에 대한 제한을 둘 것인지 논의가 있었으나,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모두 제3국 변호 사로 고용하는 경우 FTA 상대국별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입법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단계 개방국을 원자격국으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만이 합작법무법인의 소속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합작법무법인 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국 제한 형태]

	합작참여자 소재지국	3단계 개방국	모든 개방국
대표	0		
선임		0	
소속		0	

## 13. 대표(제35조의13)

제35조의13(대표)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합작참여자 회의(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 1.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일 것
- 2. 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 합작 참여자의 소재지국일 것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의 공신력 및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대해 자격 요건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도입되었다.

## 나. 참고 규정

## 외국법자문사법 제16조(설립인가)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u>총 5년 이상</u>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 다. 주요 내용

당초 대표가 국내 변호사인 경우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선임변호사일 것을, 외국법자문사인 경우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 총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선임외국법자문사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책임자급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이상으로 대표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요건을 삭제하고 선임변호사

#### 42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대표를 맡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아울러 대표 외국법 자문사의 원자격국은 합작참여자의 소재지국으로 제한하였다.

한편, 합작법무법인의 대표 자격 요건이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 자격 요건을 '7년 이상의 경력 필요'에서 '5년 이상의 경력 필요'로 함께 개정하였다(외국법자문사법 제16조).

# 14. 사무직원(제35조의14)

#### 제35조의14(사무직원)

- ① 합작법무법인은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22조제2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지방 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도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경우와 동일한 취지로 사무 직원에 대해 규정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제22조(사무직원)

-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 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1. 이 법 또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研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

#### 하다.

-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 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 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20조(사무직원)

-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22조제2항·제 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 다. 주요 내용

외국법사무만 담당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하여는 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22조제3항(사무직원의 신고, 연수) 등을 준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합작법무법인은 일부 국내법 사무를 취급하게 되는 바, 국내 법무법인의 사무직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였다.

# 15. 사무소(제35조의15)

#### 제35조의15(사무소)

- ① 합작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② 합작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합작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의 사무소 설치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분사무소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48조(사무소)

-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23조(외국법자문사무소의 운영 등)

-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② (생략)

## 다. 주요 내용

## 1) 제1항

대표에 중점을 두고 규율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허용 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에 대한 강화된 자격요건이 사문화 될 우려가 있 고, 그 형태가 대표사무소이므로 개념상 분사무소와 어울리지 않는 점 등을 고 려하여 분사무소 설립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법무법인과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는 합작법무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합작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 주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 문사의 각 3분의 1 이상이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선 임외국법자문사 각 1명 이상이 주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제1항).

여기서 '주재'라 함은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가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하여 상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무법인 주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으로 신고한 변호사가 신고와 다르게 정기적으로 분사무소에 나가 업무를 처리하거나 분사무소에 별도로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두고 상당시간 머무르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행위는 주재 요건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sup>3)</sup>

분사무소는 시·군·구 관할구역에 1개까지만 둘 수 있다(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2) 제2항

합작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할 때에는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제2항).

<sup>3)</sup> 대한변협 질의 회신(2007. 9. 17.)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같이 합작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도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외국법자문법 률사무소 등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16. 지분(제35조의16)

## 제35조의16(지분)

- ①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 ② 합작법무법인 내에 복수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있을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③ 합작참여자는 다른 모든 합작참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이 사실상 외국합작참여자의 자회사와 같이 운영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합작법무법인 내 국내 합작참여자의 역할 보장을 위해 외국 합작참여자의 기분 및 의결권을 제한하였다. 한-미, 한-EU FTA 등도 양허/유보안에서 의결권 및 지분비율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나. 참고 규정

## 한미, 한EU FTA 법률서비스 유보(양허)안(3단계 개방안)

- 2.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 2(c)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US law firms to establish,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joint venture firms with Korean law firms.
  Korea may impose restrictions on the proportion of voting shares or equity

<u>interests of the joint venture firms</u>. For greater certainty, joint ventures may,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employ Korean-licensed lawyers as partners or associates.

### 상법 제197조(사무소)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다. 입법례

### 싱가포르 Legal Profession(International Services) Rules 2008

- 4(2)(f) if the Joint Law Venture is to be constituted as a partnership, and the foreign law practice is not a Qualifying Foreign Law Practice, the number of equity partners in the foreign law practice who are resident in Singapore shall not at any time be greater than the number of equity partners in the Singapore law practice
- 4(2)(g) if the Joint Law Venture is to be constituted as a **corporation**, and the foreign law practice is not a Qualifying Foreign Law Practice, **the number** of directors nominated by the foreign law practice shall not at any time be greater than the number of directors nominated by the Singapore law practice

### 라. 주요 내용

# 1) 제1항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권리를 명시한 한-미, 한-EU FTA 등에 따라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 비율을 제한하였다. 동 조항에 따라외국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

### 50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 2) 제2항

복수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있는 경우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은 각 외국 합작 참여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 3) 제3항

합작참여자의 가입·탈퇴에 따른 지분 조정 필요성, 지분 비율 및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 양도 자체를 금지할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지분 양도를 허용하였다.

다만, 지분 변화가 합작법무법인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분 양도시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 17. 의결권 행사(제35조의17)

##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 ①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②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가. 규정 배경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비율 제한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작참여자의 의결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 나. 주요 내용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구성원 간 자율에 맡겨져 있고,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정함이 없으면 구성원이 각각 동 등한 의결권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합작법무법인에 적용할 경우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제한한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였다.

# 18. 수익분배(제35조의18)

#### 제35조의18(수익 분배)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작참여자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한다.

## 가. 규정 배경

당사자 자율에 따라 정관에서 수익분배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 합작참여자의 실질적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하도록 규정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입법례

#### 싱가포르 Legal Profession(International Services) Rules 2008

- 5(6) Subject to paragraph (7), a constituent foreign law practice of the Joint Law Venture may share in the profits of the constituent Singapore law practice of the Joint Law Venture
- 5(7) The total amount of payments made by the constituent Singapore law practice of a Joint Law Venture, during any financial year of that Singapore law practice, to the constituent foreign law practice of the Joint Law Venture under paragraph (6) shall not exceed 49% of the total profits of that Singapore law practice during that financial year arising from the permitted areas of legal practice, as in the audited fincial statement of the Singapore law practice

## 라. 주요 내용

지분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수익분배까지 제한할 필요성이 적고, 과 도한 제한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문과 같이 수익 분배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합작참여자간 수익 분배를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율에 맡기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지분 비율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는 수익 분배를 합작참여자간 자율에만 맡길 경우 국내 합작참여자의 수익 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19. 업무범위(제35조의19)

#### 제35조의19(업무 범위)

합작법무법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무서의 작성
- 2. 「공증인법」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 3. 노동 분야 자문
- 4.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 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 변경(得失變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 5.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 가. 규정 배경

선진 법률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제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이 기업자문, 금융 등 외국 합작참여자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송무, 對 정부기관 업무 등 외국로펌의 진출로 인한 실익이 적은 분야 및 특허·노동 등 FTA 미개방 분야 업무는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변리사 서비스, 노무사 서비스 업무는 미개방).

### 나. 참고 규정

### 한EU FTA 법률서비스 양허안 개방 분야

-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 1. 사업서비스
  - A. 전문직 서비스
  - a. 법률서비스(CPC 861)

다음을 제외함.

- (i) 법원 및 다른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무서의 준비
- (ii)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 (iii)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 권, 광업권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타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 (iv)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 다. 입법례

## 싱가포르 Legal Profession (International Services) Rules 2008

- 3(1) For the purposes of the definition of "permitted areas of legal practice" in section 130A(1) of the Act, the areas of legal practice to be excluded from the ambit of that definition are -
  - (a)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 (b) conveyancing;
  - (c) criminal law;
  - (d) family law;
  - (e) succession law, including matters relating to wills, intestate succession and probate and administration

- (f) trust law, in any case where the settlor is an individual;
- (g) appearing or pleading in any court of justice in Singapore, representing a client in any proceedings instituted in such a court or giving advice, the main purpose of which is to advise the client on the conduct of such proceedings, except where such appearance, pleading, representation or advice is otherwise permitted under the Act or these Rules or any other written law; and
- (h) appearing in any hearing before a quasi-judicial or regulatory body, authority or tribunal in Singapore, except where such appearance is otherwise permitted under the Act or these Rules or any other written law
- 5(2) Joint Law Venture shall not practise Singapore law except-
  - (a) in the permitted areas of legal practice

### 일본 외국법사무변호사법 제3조

- ① 외국법사무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자인의 의뢰 또는 관공서의 위촉에 의해, 원자격국법에 관한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단, 다음 각호 에 기재한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국내의 재판소, 검찰청, 기타 관공서에 있어 절차에 대한 대리 및 그 절차에 대해 이들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의 작성
- 2. 형사 관련 사건에 있어 변호인으로서의 활동과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 보조인으로서의 활동 및 도망범죄인 인도심사청구사건에 있어 보좌
- 3. 원자격국법 이외의 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감정, 기타 법적 의견의 표명
- 4. 외국의 재판소 또는 행정청을 위해 행한 절차상의 문서 송달
- 5. 민사집행법(소화 54년 법률 제4호) 제22조 제5호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의 대리
- 6.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공업소유권, 광공업, 그 외의 국내 행정성에의 등록에 의해 성립한 권리 혹은 이들의 권리에 관한 권리(이하 「공업소유권 등」이라 함)의 득실 또는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건에 대한 대리 또는 문서(감정서를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는 동일하 다.)의 작성

- ② 외국법사무변호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로서 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해서도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하거나 변호사의 서면에 의한 조언을 받아 행해야 한다.
  - 1.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공업소유권 등의 득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 중에 전항 제6호의 법률사건 이외의 것에 관한 대리 및 문서의 작성
- 2. 친족관계에 관한 법률사건에서 그 해당자로서 일본국민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대리 및 문서의 작성
- 3. 국내에 소재한 재산으로 국내에 주거하는 자가 소유한 것에 관련된 유언 혹은 사인증여에 관한 법률사건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으로 사망 시에 국내에 주거했던 자가 소유했던 것에 대한 유산 분할, 유산의 관리, 기타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으로 그 당사자로 일본국민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대리 및 문서의 작성

### 홍콩 Foreign Lawyers Registration Rules. Section 1213

- (1)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2), **a foreign lawyer shall not provide or offer any legal service** which,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can properly be **regarded as a service customarily provided by a solicitor** in his capacity as such.
- (2) A foreign lawyer may give advice on or handle any matter which-
  - (a) is expected to be subject to the law of a jurisdiction other than Hong Kong; or
  - (b) involves private or public international law or conflict of laws.

## 라. 주요 내용

# 1) 제1호

한-EU FTA 양허안의 법률서비스 개방 범위를 충실히 반영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였다.

한-EU FTA 법률서비스 양허안은 법원 및 다른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를 법률시장

#### 58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개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법률 문서의 준비"를 금지하는 경우 서면 작성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령 법률상담)가 금지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 될 여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률문서의 준비"를 "법률 문서의 작성"으로 바꾸어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였다.

### 2) 제2호

공증인법 제2조 각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대리가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은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私書證書) 또는 전자문서 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에 대한 인증 및 공증인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에 대한 촉탁 대리를 하지 못한다.

### 3) 제3호

노무서비스가 FTA를 통한 시장 개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에서도 제외하였다.

# 4) 제4호

합작법무법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밖에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타 권리의 취득, 상실 및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을 할 수 없다.

# 5) 제5호

국내법이 적용되는 친족·상속 문제 등 법률시장 개방의 실익이 크지 않은 법률 사무에 대하여 업무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20. 업무집행방법(제35조의20)

### 제35조의20(업무 집행 방법)

-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외국법자문사(이하 "담당외국법자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변호사 또는 소속외국법 자문사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될 수 없다.
- ③ 합작법무법인이「변호사법」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 ⑤ 합작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 국법자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⑥ 합작법무법인이 제5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①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⑧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한다.
- ⑨ 합작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 하고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에 대해 규정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보다.
-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 ①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 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다. 주요 내용

# 1) 제1항

변호사법 제50조(업무집행방법) 제1항을 기초로 합작법무법인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규정하였다.

변호사법 제50조제1항은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할 담당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50조제1항을 기초로 합작법무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담당변호사와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공동 지정해야 하는 구성원은 선임 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로 대신하였다.

### 2) 제2항

제1항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함에 있어 외국법자 문사는 외국법자문사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반면에, 국내 변호사는 국내법은 물론 외국법 사무도 취급할 수 있으므로 외국법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 3) 제4항

변호사법 제50조제4항의 "구성원"을 합작법무법인의 특성에 맞도록 선임변호 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로 대체하여 규정하였다.

단서 조항은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 법자문사 업무범위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만을 담당변호사로 지정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국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반면 국내 변호사는 외국법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 4) 제7항

제7항은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하도록 하였다.

#### 62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합작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제35조의28에 따라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는 제7항의 지정된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합작법무법인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국내·외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이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범위에서 합작법무법인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 33 제2항, 상법 제212조).

## 21. 부당관여금지(제35조의21)

#### 제35조의21(부당 관여 금지)

합작법무법인 내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법률사 무를 취급할 때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부당 한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에서 외국법자문사가 국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시, 감독, 관여하여 사실상 외국법자문사가 국내법 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의 국내 변호사에 대한 업무상 명령 및 부당한 관여의 금지를 규정하였다.

#### 나. 입법례

### 일본 외국법사무변호사법

제49조(권한 외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고용 관계에 의거한 업무상의 명령 금지 등)

- 1. 외국법사무변호사로서 변호사 또는 외국법사무변호사를 고용한 자는, 제3 조 및 제5조에서 제5조의 3에 규정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법률 사무 (이하 '권한외 법률 사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해, 그 고용하는 변호사 또는 외국법사무변호사에 대하여 고용 관계에 의거한 업무상의 명령을 해서는 아니된다.
- 2. 전 항의 규정을 위반해 이루어진 명령을 받아, 사용자인 외국법사무변호사 가 권한 외 법률 사무를 행하는 것에 관여한 변호사 또는 외국법사무변호 사는, 이것이 고용 관계에 의거한 업무상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이유로 하 여 징계 기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3. 외국법사무변호사로서 변호사 또는 외국법사무변호사를 고용하는 자는, 제 1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그 고용하는 변호사 또는 외국법사무변호사가 스

#### 64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스로 행하는 법률사무로서 해당 사용자인 외국법사무변호사의 권한외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 것의 취급에 대하여 부당한 관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의2(외국법 공동 사업에서의 부당관여의 금지)

외국법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사무변호사는 해당 외국법 공동사업에 관련된 변호사 또는 변호사 법인이 스스로 하는 법률사무로서 해당 외국법 사무변호사의 권한 외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 것의 취급에 대하여 부당한 관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주요 내용

합작법무법인의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정한 업무범 위 이외의 법률사무 취급에 있어서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부당한 관여를 하지 못한다.

## 22.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제한(제35조의22)

#### 제35조의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 ①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하는 경우에 해당 합작참여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였던 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相議)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의 겸직 제한 원칙 및 예외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다. 주요 내용

변호사법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를 합작법무법인의 성격에 맞도록 수정하여 규정하였다.

제1항은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 66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다만, 합작참여자는 공히 자기의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바,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합작참여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23.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제35조의23)

### 제35조의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국내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과 별도로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이 일부 국내법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작법무법인 이 국내법과 외국법이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합작참여자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과는 별도로 국내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나. 입법례

#### 싱가포르 Legal Profession (International Services) Rules 2008

- 5(2) A Joint Venture shall not practise Singapore law except -
  - (b) through -
    - (i) a solicitor who practises in the constituent Singapore law practice of the Joint Law Venture
- 5(3) A constituent foreign law practice of a Joint Law Venture shall not practise law in or from Singapore except through the Joint Law Venture

# 다. 주요 내용

국내 합작참여자에 대해 합작법무법인과 별도로 국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작법무법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일부 국내법 분야 및 송무 업무 등을 국내 합작참여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무를 수행할 별도의 국내 법무법인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 68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예컨대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이 회사법 자문 및 송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 합 작법무법인이 회사법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송무 업무는 국내 합작참여자가 수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합작법무법인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외국 합작참여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개정법의 전체 취지상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 24. 장부의 작성 · 보관(제35조의24)

### 제35조의24(장부의 작성·보관)

합작법무법인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가. 규정 배경

법무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작법무법인의 수임 관련 장부 작성 의무를 규정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28조(장부의 작성 · 보관)

-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 수임 제한(제35조의25)

#### 제35조의25(수임 제한)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 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을 승낙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 2. 수임하고 있는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3.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 자문사 또는 소속 외국변호사(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변호사,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 가. 규정 배경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규정을 참고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직무 수행에 있어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s)의 범위 등을 확정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 다. 주요 내용

### 1) 제1호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당해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방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사건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합작참여자는 지분 투자를 통해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는 바, 합작참여자가 수임하는 사건까지 이해충돌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합작법무법인 외에 합작참여자가 수임하는 사건까지 이해충돌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수임을 승낙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사건을 의미하나, 자문사건 중에서도 대립하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일방당사자에 대해 조력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고 해석4되고 있다.

# 2) 제2호

합작법무법인은 자신 및 합작참여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한 직무 또한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임하고 있는 사건"은 합작참여자가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건을 의미하며 이미 종료된 사건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제1호의 "수임을 승낙한 사건"과 차이가 있다.

# 3) 제3호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외국변호사(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sup>4)</sup> 대한변협 질의회신(2014. 4. 11.)

# 26.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제35조의26)

#### 제35조의26(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 ②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 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 ③ 합작법무법인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세무법인·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무사사무소·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설립·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의 비변호사 고용 및 동업 금지 의무를 규정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다.
-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 한미 FTA(3단계 개방안)

1.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 국 변호사법무회사(로펌)·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상사연합·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 국 내에서 대한민국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 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

### 다. 주요 내용

합작법무법인의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고용 및 동업 금지 의무를 규정하였다.

동 조항은 변호사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 금지 및 비변호사-변호사간 수익 분배 금지를 합작법무법인에 적용하는 한편, FTA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변리사), 별도의 조건하에 개방된(회계사, 세무사 등) 타 전문직역 종사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한-미, 한-EU FTA 등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약속한 다른 FTA도 타 전문직역 종사자와의 동업 및 고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보유함을 명시하고 있다.

# 27. 보고의무(제35조의27)

#### 제35조의27(보고 등)

-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35조의8에 관한 사항
- 2. 제35조의11부터 제35조의13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 3. 제35조의16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 ②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에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설립인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의 적법한 운영 보장을 위해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및 취소에 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징계 대상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외국법자문사법 제9조(보고 등)

-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외국법자문사에게 자격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자격승인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입법례

#### 싱가포르 Legal Profession (International Services) Rules 2008

- 39. The Attorney-General may require any Joint Law Venture, Formal Law Alliance, foreign law practice, representative office, Singapore law practice, foreign lawyer or solicitor to provide the Attorney-General with such documents, particulars or information as the Attorney-General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ascertaining whether -
  - (a) any of the provisions of Part IXA of the Act or any rules made thereunder or any of the conditions imposed thereunder have been complied with;
  - (b) any licence issued or registration granted under Part IXA of the Act should be cancelled; or
  - (c) any approval of the Attorney-General referred to in section 130L(1) of the Act should be cancelled.

### 라. 주요 내용

해외 로펌의 경우 설립인가 및 인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내에서 파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외국 합작참여자의 설립 인가 요건 준수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합작참여자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였다.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28. 손해배상책임(제35조의28)

#### 제35조의28(손해배상책임)

- ①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자(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합작법무법인은 그 대표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합작법무법인은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처리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 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합작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한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 대외적인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법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워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

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 변호사법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 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주요 내용

# 1) 제1항

합작법무법인 법률사무의 실제 수행 주체인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 사의 대외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당초 상법 제210조를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상법 제210조가 사원인 대표의 책임만을 상정하고 있어 합작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에 대해 준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무한책임, 연대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고, 동 조를 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자에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가 포 함되도록 하여, 이들이 합작법무법인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 2) 제2항

합작법무법인은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처리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제1항).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시행령 제16조제2항),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 자문사,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제3항).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보상한도액과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제4항).

합작법무법인은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시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제6항).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의 설정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사실상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손 해 배상 보장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 3) 제3항

합작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한다.

광고물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간행물,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17조제2항).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및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동 항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17조제1항).

# 29. 인가 취소(제35조의29)

### 제35조의29(인가 취소)

- ①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명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 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
- 3. 제3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합작참여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4.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5.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 문을 하여야 한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의 합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설립인가요건 위반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53조(인가취소)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 가를 취소함 수 있다.
  - 1.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부장관은 본점사무소가 제35조의2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본점사무소가 제15조에 따라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다. 입법례

#### 싱가포르 Legal Profession Act

- 130G (1) The Attorney-General may, by notice in writing to a Joint Law Venture or a Formal Law Alliance, suspend or revoke the Joint Law Venture licence or Formal Law Alliance licence, as the case may be, which was issued in respect of it, if the Attorney-General is satisfied that there is sufficient reason for doing so.
  - (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the Attorney-General may**, by notice in writing to a Joint Law Venture or a Formal Law Alliance, **suspend or revoke the Joint Law Venture licence** or Formal Law Alliance licence, as the case may be, which was issued in respect of it. **if**
    - (a) the registration or authorisation to practise law in a state or territory outside Singapore of the constituent foreign law practice of the Joint Law Venture or of a foreign law practice which is a member of the Formal Law Alliance, as the case may be
      - (i) has been cancelled by the relevant authority of that state or territory as a result of any criminal, civil or disciplinary proceedings; or
      - (ii) has lapsed;
    - (b) the Joint Law Venture or Formal Law Alliance, as the case may be, fails to comply with any requirement under this Part;
    - (c) the Joint Law Venture or Formal Law Alliance, as the case may be, fails to comply with any condition subject to which the Joint Law

Venture licence or Formal Law Alliance licence, as the case may be, was issued;

- (d) the **constituent foreign law practice** of the Joint Law Venture or a foreign law practice which is a member of the Formal Law Alliance, as the case may be, **has been dissolved** or is **in liquidation**;
- (e) the Joint Law Venture or Formal Law Alliance, as the case may be, has been dissolved or reconstituted without the approval of the Attorney-General; or
- (f) the Attorney-General is satisfied that it is in the public interest to do so.
- (3) Before suspending or revoking a Joint Law Venture licence or a Formal Law Alliance licence under subsection (1) or (2), the Attorney-General shall give the Joint Law Venture or Formal Law Alliance in respect of which the licence has been issued, or the constituent foreign law practice of the Joint Law Venture or each foreign law practice which is a member of the Formal Law Alliance, as the case may be, not less than 14 days to make representations in writing.

### 라. 주요 내용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변호사법 제53조에 정한 법무법인 인가취소 사유를,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제2호 및 제4호는 합작법무법인의 인가요건 위반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다.

제1호는 심사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제2항은 우리나라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한 외국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도록 하였다.

# 30. 해산(제35조의30)

#### 제35조의30(해산)

-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3. 파산하였을 때
- 4.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 5. 인가 유효기간 만료 후 인가 갱신을 받지 못한 때
- ② 합작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
- 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의 해산 사유 및 해산시 신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54조(해산)

-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3. 합병하였을 때
  - 4. 파산하였을 때
  -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주요 내용

변호사법 제54조상 법무법인의 해산사유를 합작법무법인의 실질에 맞도록 변경하여 규정하였다.

해산사유는 법무법인의 해산사유와 유사하다. 다만, 합작법무법인의 경우 합병을 예정하지 않은 바, 변호사법 제54조 제1항 제3호 사유는 합작법무법인 해산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 31. 인가 등 통지(제35조의31)

#### 제35조의31(인가 등 통지)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의 인가, 인가 취소 및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의 인가, 인가취소 및 해산 시 법무부장관의 통지 의무를 규정하였다.

### 나.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5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주요 내용

변호사법 제56조상 법무법인의 인가, 취소, 해산 및 합병에 따른 통지 의무를 합작법무법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규정하였다.

# 32. 준용 규정(제35조의32)

### 제35조의32(준용 규정)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6장을 준용한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에 적용되는 징계 규정을 명시하였다.

# 나. 주요 내용

합작법무법인에 외국법자문사법 제6장 징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대하여 법무부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 설하였다(법 제40조 제9항).

# 33. 다른 법률의 준용(제35조의33)

#### 제35조의33(다른 법률의 준용)

- ①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27조5, 제28조의26, 제30조7 및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89의 규정(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 ②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제173조9,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10) 및 제242조부터 제244조까지11)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규정 배경

합작법무법인이 상법상 합명회사,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규정을 참고하여 만들 어진 점을 고려하여 필요 규정을 준용하였다.

# 나. 주요 내용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일반 의무, 상법상 합명회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도, 국내·외 합작참여자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점, 합작법무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을 예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을 준용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sup>5)</sup>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sup>6)</sup>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sup>7)</sup>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sup>8)</sup>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sup>9)</sup> 상법 제173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sup>10)</sup> 합병 관련 규정

<sup>11)</sup> 조직변경 관련 규정

# 34. 타법 개정(부칙 제2조)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제 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가. 규정 배경

변호사법상 필요 부분에 합작법무법인을 반영하는 취지로 부칙을 통하여 일부 변호사법을 타법 개정 하였다.

### 나. 주요 내용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연수 기관(변호사법 제21조의2),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 제출이 의무화 되는 취업 기관(변호사법 제89조의6)에 합작법무법인이 포함되도록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공직퇴임 변호사의 1년 수임 제한 대상(변호사법 제31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한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 제한 대상(변호사법 제31조의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 적용 대상(변호사법 제89조의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 의무 적용대상(변호사법 제89조의5)에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가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부 록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 91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 132 한·EU FTA 법률서비스 양허안(국·영문) / 142 한·미 FTA 법률서비스 유보안(국·영문) / 148 변호사법 / 157 변호사법 시행령 / 215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2016.7.1.] [법률 제14056호, 2016.3.2.,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 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

- 1. "변호사"라「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 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 5.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의 법령 등에 관한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다만, 어느 국가 내에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이 부여되는 여러 개의 도(道)·주(州)·성(省)·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지역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 6. "외국법사무"란 원자격국의 법령(원자격국에서 효력을 가지거나 가졌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 등 제24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가 수행하도록 허용된 업무를 말한다.

- 7.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법령,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대한민국 외 국가 간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의 중재 사건을 말한다.
- 8. "자유무역협정등"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구와 외국법사무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 9. "합작법무법인"이란 외국법사무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10. "국내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말한다.
- 11. "외국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35조의2제1 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 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를 말한다.
- 12. "합작참여자"란 국내 합작참여자 및 외국 합작참여자를 말한다.

#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 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 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4.5.>

- 제4조(직무 경력) ①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 이 있어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등의 사무를 근로자인 자기의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6.>
  - 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가 중에 있는 사람
  - 4. 국가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 102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하 사람
  -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 제6조(자격승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 94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 1.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 2.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 3. 제4조에 따른 직무 경력이 있을 것
-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 5.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 6. 제3조제2항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이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격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1항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자격승인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 2. 제5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자격승인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 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4. 자격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8조(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또는 자격승인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대상자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 ② 자격승인 및 그 취소는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있다.
- 제9조(보고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외국법자문사에게 자격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자격승인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 제10조(등록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원자격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증명서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법자문사 명부에 등록 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원자격국을 외국법자문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명부에 등록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2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 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 및 등록의 갱신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 협회가 정한다.
- 제12조(등록거부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 1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심신장애(心神障碍)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 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 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7조에 따라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 4.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되거나 제13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명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없거나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외국법자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 는 경우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 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 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사(제2항제1 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명서를 대한변호사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⑤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거부 시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4조(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 1. 제12조에 따른 등록거부 또는 등록의 갱신거부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9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제15조(설립신청 등) 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이하 "본점사무소"라 한다)에 소속된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는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4.5.>
- 제16조(설립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1.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 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 2. 본점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사무소로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 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 4.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할 것
  - ②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

- 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 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를 본점사무소로 본다.
-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결원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17조(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제2항의 신청인과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 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는 제1항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있다.
  -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①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2. 구성워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 4. 설립인가 연월일
  -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 100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 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 2. 제16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서면
- 3. 제2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4. 제34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34조의4에 따른 취소에 관한 서면
- ⑥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 ⑦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 2011.4.5.>
- 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 5. 법무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공익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 7.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 8.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을 위반하 여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본점사무소가 제35조의2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

- 우에는 해당 본점사무소가 제15조에 따라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 ⑤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
- 제20조(사무직원)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22조제2항·제 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 자"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 제21조(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외국법사무의 수행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한다.
- 제22조(장부의 작성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23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집행 방법 및 그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50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 및 제52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해당 조항 중 "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제24조의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① 외국법자문 사 아닌 외국변호사(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4조제3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변호사는 제24조제3호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1년에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체류 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25조(업무수행의 방식) ①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 3.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
- 4.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 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5.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
- ②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3.2.>
- 제26조(신고 등) ①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일시 휴업한 경우 또는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식 외의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및 그 원자격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 ⑤ 합작법무법인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전체 합작참여자, 선임변호사, 소속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및 소속외

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원자격국을 포함한다)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 ⑥ 외국법자문사 또는 합작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외국법사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그 원자격국(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담당외국법자 문사의 원자격국을 말한다)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 ⑦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3.2.>
- 제28조(윤리기준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다.
  -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倫理章典)을 준수하여 야 한다.
- 제29조(체류 의무) ①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 ② 외국법자문사가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 제30조(비밀유지 의무)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 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광고) ①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는 합작참여자,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 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의 원자격국,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신문·잡지·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② 제1항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 문사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 ③ 외국법자문사의 광고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등"은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 제32조(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①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3.2.>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 제33조(자료 제출의 의무)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 인은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2조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재산의 현황, 수임·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 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
- 제34조(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세무법인·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사무소·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 제34조(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 변리사·특허법인 · 특허법인(유한) · 공인회계사·회계법인 · 세무사·세무법인 · 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률사무소·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법무사사무소 · 법무사법인 · 법무사법인(유한) · 병리사사무소 · 특허법인 · 특허법인(유한) · 공인회계사사무소 · 회계법인 · 세무사사무소 · 세무법인 · 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 · 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2016.2.3.>

제34조의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① 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 · 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34조의3에 따른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이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률사무에 대하여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4.5.]
- 제34조의3(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은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
- 제34조의4(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사무소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명령이 있거나 등록취소명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5.]

- 제34조의5(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그 외국법자 문법률사무소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그 상대방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명칭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 계약체결일,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 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처리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
- 제35조(「변호사법」의 준용)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28 조의2,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개정 2016.3.2.>

##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신설 2016.3.2.〉

- 제35조의2(설립) 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고 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 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외국 합작참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 소재지 국가를 기준으로 제1항의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을 정한다.

-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합작참여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합작참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일부터 5년으로 한다.
  - ④ 설립인가의 갱신 신청은 제3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 기준 및 지분 비율
  - 4. 합작참여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합작참여자 회의에 관한 사항
  - 6.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 7.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 8.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5(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

#### 110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 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 4.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 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 5.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 6.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8. 설립인가 연월일
- ③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6(명칭) ① 합작법무법인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통용되는 약칭을 포함한다)을 병기하고, 그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합작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①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 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한다.
  - ②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 ③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작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제35조의8(합작참여자)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 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5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 3. 주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 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최근 5년간 그 대표가 국내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를 받은 경우로서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국내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 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 2.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5명 이상의 외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 3. 제35조의2제2항의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

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 가. 최근 5년간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최근 5년간 그 대표가 외국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외국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 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9(합작참여자의 가입) ① 합작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새로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하게 되는 합작참여자는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35조의10(합작참여자의 탈퇴) ① 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②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 1. 「변호사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

- 2.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해산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2.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11(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① 「변호사법」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2명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둔다.
  - 1.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 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거나,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 3.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 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일 것
  - ②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외국법자문사 수는 선임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 ③ 제35조의15제3항,「변호사법」제21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같은 법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합작법 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작 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할 수 있다.
  -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인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12(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① 「변호사법」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아닌 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이어야 한다.
  - ③ 합작법무법인 내 소속외국법자문사 수는 소속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35조의13(대표)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합작참여자 회의(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 1.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일 것
  - 2. 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 합작참 여자의 소재지국일 것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14(사무직원) ① 합작법무법인은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22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지방변호 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 제35조의15(사무소) ① 합작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② 합작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합작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둘 수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16(지분) ①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 ② 합작법무법인 내에 복수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있을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③ 합작참여자는 다른 모든 합작참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①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②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18(수익 분배) 「변호사법」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작참여자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한다.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19(업무 범위) 합작법무법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작성
  - 2. 「공증인법」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 3. 노동 분야 자문

- 4.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 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 (得失變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 5.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20(업무 집행 방법)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외국법자문사(이하 "담당외국법자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변호 사 또는 소속외국법자문사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될 수 없다.
  - ③ 합작법무법인이「변호사법」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 ⑤ 합작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 자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⑥ 합작법무법인이 제5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⑦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

- 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⑧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한다.
- ⑨ 합작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21(부당 관여 금지) 합작법무법인 내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때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부당한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①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하는 경우에 해당 합작참여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였던 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相議)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나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35조의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국내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 인과 별도로「변호사법」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24(장부의 작성·보관) 합작법무법인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5조의25(수임 제한)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을 승낙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 2. 수임하고 있는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 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3.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 문사 또는 소속 외국변호사(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26(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변리사·공 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 ②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 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 ③ 합작법무법인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세무법인·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무사사무소·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27(보고 등)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35조의8에 관한 사항
  - 2. 제35조의11부터 제35조의13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 3. 제35조의16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 ②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에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설립인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28(손해배상책임) ①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자(담당변호사 및 담당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합작법무법인은 그 대표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합작법무법인은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처리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 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합작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9(인가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20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 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명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
- 3. 제3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합작참여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4.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5.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30(해산)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3. 파산하였을 때
  - 4.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 5. 인가 유효기간 만료 후 인가 갱신을 받지 못한 때
  - ② 합작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31(인가 등 통지)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의 인가, 인가 취소 및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조의32(준용 규정)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6장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33(다른 법률의 준용) ①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27조, 제28조의2,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 ②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제173조,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 지 및 제242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징계

제36조(징계의 종류)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자격승인취소
- 2. 등록취소
- 3. 3년 이하의 정직(停職)
-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5. 견책
- 제37조(징계 사유) ①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제36조제3호에 따른 정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 2.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위반한 경우
-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경우
-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는 외국법자문 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 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 제39조(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있다.
  -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및 외국법자문사 2명
  -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명
  -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 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7명을 둔다.
  - ②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위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 2. 검사 중에서 각 2명
  - 3. 외국법자문사 중에서 각 1명
  -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 5.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과대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각 1명
  - ③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④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제127조 및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1.6.>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징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 제41조(징계위원회의 권한)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과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 제42조(징계개시의 청구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외국법자문사가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외국법자 문사에게 제37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대 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외국법자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 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97조의5를 준용한다.
- 제43조(징계의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4조(징계의 집행·절차 등) ① 제36조제1호에 따른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하고,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 ② 제36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 ③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4제2항·제3항, 제98조의5제3항·제4항, 제99조, 제100조 및 제101조의2를 준용한다.
- 제45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공소(公訴)가 제기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결과 자격승인취소 또는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무사"로 본다.

##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1.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외국법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는 제외한다.
- 2. 제35조 및 제35조의33에 따라 준용되는「변호사법」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 사람
- 3.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외국법자문사. 다만, 외국법자문사가 제24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다.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 마.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6.3.2.>
  -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외국법자문사
  - 2. 제3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및 그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사용한 사람
  -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

-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
  - 가. 외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위하여 행하는 문서의 송달과 증거조사를 행한 사람
  - 나.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 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 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대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작성을 행한 사람
- 6.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1. 법무부장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또는 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청을 하여 자격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
  -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변호사
  -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하 사람
  -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과세사
  - 5. 제35조 및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변호사법」제32조를 위반하여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한 사람
  - 6.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 7.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신청을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람

- 8. 제3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 9. 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 10.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1. 제3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변호사법」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광고 를 한 사람
  -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 3. 제35조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 의25제3호를 위반한 사람
  - 4. 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 5.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사람
- 제50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다.
- 제51조(외국인의 국외범) 제47조제2호는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 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 액(價額)을 추징한다.
-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
  -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 2.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와 그 사용자
  - 4.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 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 5. 제29조를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 6. 제35조의28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개정 2011.4.5., 2016.3.2.>
  - 1. 제22조를 위반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제22조제2 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 1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체류한 사람
  - 2. 제33조를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 짓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 법무법인
  - 3.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 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 4. 「공증인법」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
  - 5.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 6.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제2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

#### 130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거나, 제35조의24를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 7. 제35조의30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8.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사건 유치 목적으로 출입·주재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사건을소개·알선·유인한 사람 또는 합작법무법인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

### 부칙 <제14056호, 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 정된 경우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 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61호, 2016.6.28.,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2. 이력서
  - 3. 법 제6조제1항제2호 · 제3호 ·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 7. 그 밖의 참고 서류
- 제3조(서약 내용의 확인)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제2조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직무 경력에의 산입)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 제4조제 1항의 직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 등의 수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법률사무 수행 기간: 3년까지
  -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2년까지

- 제5조(예비심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 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 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3. 그 밖의 참고 서류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 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법 제17 조제1항의 설립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 무소의 대표자는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이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 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간행물
  - 2.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
-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 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 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3. 법 제35조의8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4. 그 밖의 참고 서류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 2. 합작법무법인의 명칭
-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4. 선임변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 5. 합작참여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1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합작참여자는 신청 전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8.]

-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변경 이유서
  - 2. 정관변경안
  - 3. 정관변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로, "설립인가"는 "정관변경 인가"로 본다.

[본조신설 2016.6.28.]

- 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설립 인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 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갱신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 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
- ③ 합작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 ④ 합작법무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일 이내에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경미한 사유) ①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국내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나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
    - 가. 1년 이하의 정직에 상당하는 징계
    - 나. 과태료
    - 다. 겨책
  -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 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 ②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국내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징계를 받았을 것
    - 가. 1년 이하의 정직

- 나. 과태료
- 다. 겨책
- 2. 제1호에 따른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 ③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외국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 가. 1년 이하의 정직
  - 나. 과태료
  - 다. 겨책
-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 ④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외국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 가. 1년 이하의 정직
  - 나. 과태료
  - 다. 견책
-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 [본조신설 2016.6.28.]

- 제15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 법 제35조의15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주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그 총 인원의 3분의 1 이상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1명 이상 주재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5조의15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분사무소는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 ④ 분사무소에는 합작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 의28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의5제1항의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③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 액의 합계액을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법 제35조의12제1항에 따른 소속변호사(이하 "소속변호사"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소속외국법자문사(이하 "소속외국법자문사"라 한다)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합작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

### 140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 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야 한다.
- ⑥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8.]
- 제17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8제3항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및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간행물
  - 2.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 [본조신설 2016.6.28.]

## 부칙 <제27261호,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외국법 자문사법」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②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중 "법률사무소"를 각각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 법률서비스 양허안·유보안

## 1-1. 한·미 FTA 법률서비스 유보안(국문)<sup>12)</sup>

## 【부속서 I】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6, 제58조의22 및 제109조(법률 제8271호, 2007.1.26)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법률 제7895호, 2006.3.24)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7428호, 2005.3.31)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당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 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당해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 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 - 외국법 자문사 분야에서 준수되는 약속을 전제로 한다.

<sup>12)</sup> 한미 FTA 유보안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분은 2007. 12. 법조지에 실린 '한미 FTA 법률서비스 개방 분야 타결 내용에 관한 연구'(최용훈 검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 【부속서 Ⅱ】

분 야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 1.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 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자격 부여·승인·등록·허용·감독 및 그 밖 의 요건에 대한 제한
- 나.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 사법무회사(로펌)·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관세사와 동업·상사연합·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 하고 그 밖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에 대한 제한
- 다.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 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그리고
-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실체의 이사회 의장 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sup>13)</sup>
  -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합중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외국법자문사로서 대한민국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나.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법자문사무소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다.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기업은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변호사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하 조치를 유지한다.
-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라 함은 미합중 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미합중국 내에 있는 법무회 사(로펌)를 말한다.

<sup>13) 2</sup>의 가.항이 1단계 수준의 개방을, 나.항이 2단계 수준의 개방을, 다.항이 3단계 수준의 개방을 나타내고 있다.

## 1-2. 한·미 FTA 법률서비스 유보안(영문)

## [Annex I]

Sector Professional Service - Legal Service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Article 12.4.)

Local Presence (Article 12.5)

Measure: Attorney-at-law Act(law No. 8271, January 26, 2007),

Articles 4, 7, 21, 34, 45, 58-6, 58-22 and 109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law No. 7895, March

24, 2006), Articles 2, 3, and 14

Notary Public Act(law No. 7428, March 31, 2005),

Articles 10, 16, and 17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nly a *byeon-ho-sa*(Korean-licensed lawyer) registered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may supply legal services. Only a *byeon-ho-sa*(Korean-licensed lawyer) may establish the following types of legal entity: *beop-yool-sa-mu-so* (law office), *beop-mu-beop-in*(law compan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 *beop-mu-beop-in*(Yoo-han) (limited liability law company), or *beop-mu-jo-ha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aw office)

A *byeon-ho-sa*(Korean-licensed lawyer) or *beop-mu-sa* (Korean-certified judicial scrivener) who practices in Korea must establish an office in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in which he or she practises. A gong-jeung-in(Korean notary public) must establish an office in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or in which he or she practises.

This entry is subject to the commitments undertaken in the entry for Legal Services - Foreign Legal Consultants in the Schedule to Annex II.

## [Annex I]

Sector Legal Service - Foreign Legal Consultant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11.3 and 12.2)

Local Presence (Article 12.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9)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1.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a) Restrictions on certification, approval, registration, admission, supervision of, and any other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foreign country-licensed lawyers or foreign law firms supplying any type of legal services in Korea;
- (b) Restrictions on foreign country-licensed lawyers or foreign law firms entering into partnerships, commercial associations, affiliations, or any other relationship regardless of legal form, with *byeon-ho-sa*(Korean-licensed lawyer), Korean law firms, *beop-mu-sa*(Korean judicial scrivener), byeon-risa(Korean patent attorney), *gong-in-hoe-ge-sa*(certified public accountant), se-mu-sa(Korean certified tax accountant) or *gwan-se-sa*(Korean customs broker)
- (c) Restrictions on foreign country-licensed lawyers or foreign law firms hiring byeon-ho-sa(Korean-licensed lawyer), beop-mu-sa(Korean judicial scrivener), byeon-ri-sa(Korean patent attorney), gong-in-hoe-ge-sa(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e-mu-sa(Korean certified tax accountants) or gwan-se-sa(Korean customs brokers) and,
- (d) Restriction on senior managem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legal entities supplying foreign legal consulting services,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chairman.

###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 (a) No later tha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U.S. law firms to establish representative offices(Foreign Legal Consultants offices or FLC offices) in Korea, and attorneys licensed in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legal advisory services regarding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y are licensed and public international law as foreign legal consultants in Korea.
- (b)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FLC offices,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to enter into specific cooperative agreements with Korean law firms in order to be able to jointly deal with cases where domestic and foreign legal issues are mixed, and to share profits derived from such cases.
- (c)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U.S law firms to establish,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joint venture firms with Korean law firms. Korea may impose restrictions on the proportion of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s of the joint venture firms. For greater certainty, such joint ventures may,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employ Korean-licensed lawyers as partners or associates.
- 3. Korea shall maintain, at a minimum, the measures adopted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in paragraph 2.

For the purpose of this entry, U.S. law firm means a law firm organized under U.S. law and headquartered in the United States.

# 2-1. 한·EU FTA 양허안(국문)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Ⅱ. 분야별 구체적 약속	<u></u>		
1.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861)	1) 2) 3) (a)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대한민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1. 국제상사 중재에서의 대리는 중재에서 적용 가 능한 절차법과 실 체법이 외국법자문
다음을 제외함.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기 개업하는 지		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
(i) 법원 및 다른 정부 기관에서의 사법절 차 또는 법적 절차 를 위한 대리 및 그 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ii) 공증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함. 공증인의 사무소는 해당 공		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이거나 국제 규범인 경우에 허용됨.  2. 원자격국 직명의 본국 언어로의 사용이 허용됨. 다만, 한글로 "외국 법자문사"라는 직
11-1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음. (b) (a)에서 공급이 허용된 법률 서비스 이외의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을 제외함.		명과 함께 사용되 어야 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Ⅱ. 분야별 구체적 약속	<del>}</del>		
비스 또는 대한민 국의 부동산에 관 한 권리, 지적재산 권, 광업권 또는	대하여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을 제외함.  (i)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에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변호사가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관한 법및 국제공법에 관하여외국법자문사로서 대한민국에		3. 회사이름의 사용은 허용 됨. 단, 한글 로 "외국법자 문법률사사무 소"라는 명칭 과 함께 사용 되어야 함.

<sup>14)</sup>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Ⅱ. 분야별 구체적 약	속		
	(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하여금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있도록 허용함.		
	i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이러한 합작기업은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변호사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고용할 수 있음.		

하는 것에 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감독 및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b)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또는 법적 형태를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c)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그리고 (d) 제7장의 각주 16 및 2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 된 사항 이외에는 약속 안함. 자연인의 이동은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서만 허용된다. 외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의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 자 문서비스만 허용됨.	기재된 사항 이외에	

#### 아래 정보는 오직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

- 1.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하며,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어야 함.
- 2. 대한민국에서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인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있어야 함.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외국법 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됨. 동 대표 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7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하였어야 함.
- 3.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의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 반을 유지하여야 함.
- 4. 이 분야의 약속의 목적상,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되어 유럽연합 회원국에 본 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 의 지사, 현지 사무소, 현지법인 또는 합작기업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법무회사 (로펌)의 어떠한 종류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대한민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
- 5. 외국법자문사는 일 년에 최소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됨.

# 2-2. 한·EU FTA 양허안(영문)

Modes of supply: 1) Cross-border supply 2) Consumption abroad 3) Commercial presenc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

Sector or Sub-sector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Limitations on National Treatment	Additional Commitments	
II. SECTOR-SPECIFIC COMMITMENTS				
1. BUSINESS SERVICES				
A. Professional Services  a. Legal services; (CPC 861)  Excluding  (i) representation for juridical or statutory procedures in courts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as well as preparation of legal documents for such procedures;  (ii) legal representation for the entrustment of the preparation of notarial deeds;	1)2)3) (a) Only a byeon-ho-sa (Korean-licensed lawyer) registered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may supply legal services.  A byeon-ho-sa (Korean-licensed lawyer) or a beop-mu-sa (Korean-certified judicial scrivener) who practices in Korea must establish an office in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in which he or she practices. A gong-jeung-in (Korean notary public) must establish an office in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or in which he or she practices.	1)2)3) The same limitation as specified in (b) of MA column apply.	1. Representa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permitted, provided that the applicable procedural and substantive laws in the arbitration are either the laws which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is qualified to practice in Korea, or international rules.  2. Use of home title in its own language is permitted, provided that it is used with reference to "Foreign Legal Consultant" in Korean.	

Sector or Sub-sector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Limitations on National Treatment	Additional Commitments
II. SECTOR-SPECIFIC	COMMITMENTS		
(iii) activities concerning labor affairs consulting services or a legal case whose objective is the acquisition, loss or change or rights concerning real property i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ining rights or other rights arising upon registration thereof with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and	Only a <i>byen-ho-sa</i> (Korea-licensed lawyer) may establish the following types of legal entity: <i>beop-yool-sa-mu-so</i> (law office), <i>beop-mu-beop-in</i> (law compan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 <i>beop-mu-beop-in(yoo-han)</i> (limited liability law company), or <i>beop-mu-jo-hap</i>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aw office).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that is not a Korean-licensed lawyer is not permitted to invest in any of these types of legal entity.  (b) Unbound for legal services other than legal services permitted to provide in (a) <sup>15)</sup> , except for the followings:		3. Use of firm name is permitted, provided that it is used with reference to "Foreign Legal Consultants Office" in Korean.

<sup>15)</sup>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restrictions on certification, approval, registration, admission, and supervision of, and any other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foreign country-licensed lawyers or foreign law firms supplying any type of legal services in Korea; (b) restrictions on foreign country-licensed lawyers or foreign law firms entering into partnerships, commercial associations, affiliations, or any other type of relationship regardless of legal form, with byeon-ho-sa (Korean-licensed lawyers), Korean law firms, beop-mu-sa (Korean judicial scriveners), byeon-ri-sa (Korean patent attorneys), gong-in-hoe-ge-s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e-mu-sa (Korean certified tax accountants) or gwan-se-sa (Korean patent attorneys), going-in-hoe-ge-s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e-mu-sa (Korean patent attorneys), going-in-hoe-ge-s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e-mu-sa (Korean certified tax accountants) or gwan-se-sa (Korean customs brokers); and (d) restriction on senior managem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legal entities supplying foreign legal consulting services,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chairma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the footnotes 16 and 25 in Chapter Seven.

Sector or Sub-sector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Limitations on National Treatment	Additional Commitments	
II. SECTOR-SPECIFIC COMMITMENTS				
(iv) activities in a legal case concerning family relations or inheritance, in which a Korean national is involved as a party or the property concerned is located in Korea.	(i) No later tha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law firm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o establish representative office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s or FLC offices) in Korea, and lawyers licensed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o provide legal advisory services regarding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y are licensed and public international law as foreign legal consultants in Korea; and			
	(ii)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a representative office,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e this Agreement, to enter into specific cooperative agreements with Korean law firms in order to be able to			

Sector or Sub-sector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Limitations on National Treatment	Additional Commitments		
I. SECTOR-SPECIFIC O	I. SECTOR-SPECIFIC COMMITMENTS				
	jointly deal with cases in which domestic and foreign legal issues are mixed, and to share profits derived from such cases.				
	(iii)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law firm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o establish,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joint venture firms with Korean law firms. Korea may impose restrictions on the proportion of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s of the joint venture firms. For greater certainty, such joint venture firms may,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employ Korean-licensed lawyers as partners or associates.				

Sector or Sub-sector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Limitations on National Treatment	Additional Commitments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is only allowed in relation to a commercial presence.  Only legal advisory services on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foreign lawyers are licensed and public international law is permitted.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provided for transparency purposes only:

- 1. A foreign lawyer who wishes to practice law as Foreign Legal Consultant (FLC) in Korea must be approv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must register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must have practised law for at least 3 years in the jurisdiction where he or she is qualified as a lawyer, and must be in good standing of the legal profession in the jurisdiction.
- 2.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registration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are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presentative office in Korea. The representative office consists of a FLC or FLC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It must have credibility and expertise, and sufficient capa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s caused to clients, if any. The chief of the representative office must have practised law for at least 7 years, including 3 years in the jurisdiction of his or her qualification.
- 3. A representative office can conduct profit-making activities provided that such presence in Korea maintains proper business plans and financial bases.
- 4. For purposes of the commitment in this sector, only a law firm which is organized under the relevant law of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and headquartered in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can establish its representative office in Korea. Any type of subordinate or dependent legal ent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branch, a local office, a subsidiary or a joint-venture firm of the law firm of a country that is not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not be permitted to establish its representative office in Korea.
- 5. A Foreign Legal Consultant is required to stay in Korea not less than 180 days a year.

# 변호사법

[시행 2016.7.1.] [법률 제14056호, 2016.3.2., 타법개정]

#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개정 2008.3.28.〉

-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 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장 변호사의 자격 〈개정 2008.3.28.〉

-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 이 있다. <개정 2011.5.17.>
  -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158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 자
  -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9.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6조 삭제 <2008.3.28.>

#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개정 2008.3.28.〉

-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 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삭제 <2014.5.20.>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 160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 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08.3.28.]
-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 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 2. 제18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 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08.3.28.〉

제21조(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 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 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개정 2016.3.2.>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 무공단
-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 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 6. 대한변호사협회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 사무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 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사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

-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①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1항 단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기간으로 본다.
- 3. 거짓으로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4. 제5항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
-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제6호에 따른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 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변호 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같은 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에 필요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7.]

##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 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 1. 이 법 또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研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다.
-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 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 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 회가 정하는 광고
-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 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장부의 작성 · 보관)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查)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 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 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

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5.17., 2016.3.2.>
-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 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 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7.> [전무개정 2008.3.28.]
-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 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6.3.2.>
  -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과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5.17.]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 니 된다.

-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 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하는 행위
  -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 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다.
  -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 위·감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 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

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 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08.3.28.]

[전문개정 2008.3.28.]

# 제5장 법무법인 〈개정 2008.3.28.〉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174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8.3.28.]
- 제43조(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 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7. 설립인가 연월일
  -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4조(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7.>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 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하다.
- 1. 사망한 경우
-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8.]

- 제48조(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2.6.>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워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 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8.]

제51조(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4조(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3. 합병하였을 때
  - 4. 파산하였을 때
  -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5조(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8.3.28.]

제5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삭제 <2009.2.6.>

[전문개정 2008.3.28.]

##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신설 2005.1.27.〉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의3(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의5(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 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 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8. 설립인가 연월일
  -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1. 구성원이 아닌 자
  -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되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 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 4. 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의14(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 3. 합병하였을 때
- 4. 파산하였을 때
-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의15(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

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 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전무개정 2008.3.28.]
-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② 삭제 <2009.2.6.>

[전문개정 2008.3.28.]

# 제5장의3 법무조합 〈신설 2005.1.27.〉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제58조의19(설립 절차)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3.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3. 출자금액의 총액
  -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6. 설립인가 연월일
  -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 2. 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제58조의22(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 ②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 ③ 법무조합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 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제58조의23(업무 집행) ① 법무조합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 ② 법무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 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의28(해산)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2.6.>

[전문개정 2008.3.28.]

## 제6장 삭제 〈2005.1.27.〉

제59조 삭제 <2005.1.27.>

제60조 삭제 <2004.1.27.>

제61조 삭제 <2005.1.27.>

제62조 삭제 <2005.1.27.>

제63조 삭제 <2005.1.27.>

##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5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 · 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28.]

제67조(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8조(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 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 190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전문개정 2008.3.28.]

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 1. 회장
- 2. 부회장
- 3. 상임이사
- 4. 이사
- 5. 감사
-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 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8.3.28.]

제69조의2(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4.5.]

제70조(총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회칙의 변경
- 2. 예산 및 결산

[전문개정 2008.3.28.]

제71조(이사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

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 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5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 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5조의2(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 변호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7조(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 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 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개정 2008.3.28.〉

-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무개정 2008.3.28.]

-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28.]
- 제80조의2(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고, 대한변 호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4.5.]

제81조(임원) ①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 1. 협회장
- 2. 부협회장
- 3. 상임이사
- 4. 이사
- 5. 감사
-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 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4.5.>

- 제82조(총회)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전문개정 2008.3.28.]
- 제83조(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 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 제84조(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연수교육의 방법·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의 지정절차 및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7조(준용규정)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제71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전문개정 2008.3.28.]

#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개정 2008.3.28.〉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7.1.26.]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다.

-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전문개정 2008.3.28.]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196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 ②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면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윤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 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외국법자문사

- 법」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3.2.>
-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6.3.2.>
  -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 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이란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 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③ 제1항은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 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한다.
- ④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17.]

[종전 제89조의6은 제89조의7로 이동 <2011.5.17.>]

- 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9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89조의7는 제89조의8로 이동 <2011.5.17.>]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9조의7에서 이동 <2011.5.17.>]

-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 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3.5.28.]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3.28.〉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 1. 영구제명
- 2. 제명

- 3. 3년 이하의 정직
-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5. 겨책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다.
  -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 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 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겪할 수 없다.

-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 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 명을 둔다.
  -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 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8.3.28.]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

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 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 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7조의5(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

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 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 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8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 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 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 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99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 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 하여는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제101조(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1조의2(「형사소송법」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03조(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②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8조제3항 및 제9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 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 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 1.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전문개정 2008.3.28.]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항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7.>
  -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 한 변호사
  -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 (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 4.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 5.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 6.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전무개정 2008.3.28.]

- 제116조(몰수·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 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8.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5.28.>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그처분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3.5.28.>
-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5.28.> [전문개정 2008.3.28.]

## **부칙** <제14056호, 2016.3.2.> (외국법자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제2 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61호, 2016.6.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①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정신청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인적사항
  - 2. 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
  - 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수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개요
  - ②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정신청기관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통산하여 5년 이상「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1명 이상이 재직할 것. 이 경우「법원조직법」제42조제 1항 각 호에 규정된 직 중에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사하다.
  - 2.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
  - 3.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또는 일반 법률 사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을 것

- 4.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것
- 5. 사무실 공간 등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할 것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 청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신청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신청기관에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관·법인·조합·단체나 사무소 중에서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곳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해당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0.26.]

- 제3조(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이하 "국제기구등"이라 한다)를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사무종 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법 제4조제3호의 변호사
  - 2. 국제기구등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의 구성원, 취급업무, 사무실 시설 등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 제4조(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5조(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 제 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법 제21조의2제10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6.]

제5조의2(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 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또는 연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6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형법」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제3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2.6.7.>

- 제7조(장부의 작성·보관) ① 법 제28조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임일
  - 2. 수임액
  - 3. 위임인 · 당사자 ·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 4.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 5.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 6. 처리 결과
  - ③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방법, 작성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원조직법」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해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법원조직법」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 2. 「검찰청법」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 청 및「검찰청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 3. 「군사법원법」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
- 4. 「군사법원법」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 5. 「경찰법」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 6.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 7. 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 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0.26.]

- 제7조의3(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공익목적 수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임을 말한다.
  - 1. 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
  -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 3.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11.10.26.]

- 제8조(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 1. 재판기관
    - 가. 헌법재판소
    - 나. 「법원조직법」제3조제1항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
    - 다. 「군사법원법」제5조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 2. 수사기관
    - 가. 「검찰청법」제3조제1항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지청
    - 나. 「경찰법」제2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 청, 경찰서
    - 다. 「정부조직법」제22조의2제1항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 장·제8장에 따른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 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3조부 터 제5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해당 소속기관 또는 시설
  - 마. 「군사법원법」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전문개정 2008.9.3.]
- 제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 가를 받으려면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구성원회의 회의록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 2. 법무법인의 명칭
-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4.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제10조(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 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1. 정관변경 이유서
  - 2. 정관변경안
  - 3. 정관변경에 관한 구성원회의 회의록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면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 제1항에 따른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1조(법무법인의 등기) ① 법무법인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 ② 등기소에는 법무법인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③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법무법인 설립인가증
  - ④ 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주용하다.
  - ⑤ 법무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전문개정 2008.9.3.]
- 제12조(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5년 이상「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구성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 ④ 분사무소에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 제13조(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 1.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 2.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 4. 「상법」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전문개정 2008.9.3.]
- 제13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 (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합계 액은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이 중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 1. 자기자본이 5억원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2. 자기자본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억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5억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전문개정 2008.9.3.]
- 제13조의3(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법 제5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무법인 (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간행물
- 2.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 [전문개정 2008.9.3.]
- 제13조의4(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 ③ 법무법인(유한)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⑤ 법무법인(유한)은 제4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 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 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3.]

제13조의5(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9.3.]

- 제13조의6(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열람) ①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법 제58조의21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면을 제출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제목, 제출자 및 제출일자를 적은 후 제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면의 내용 중 구성원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및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13조의7(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14조 삭제 <2005.7.27.>

제15조 삭제 <2005.7.27.>

- 제16조(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 제65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 인가 신청을 하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회칙
  -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 제17조(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① 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 결의내용 보고는 그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 제17조의2(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 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18조(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조윤리협의회 (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27.]

제19조(윤리협의회 위원) ① 위원은 윤리협의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의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20조(후임 위원의 지명 등) 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임기만 료일 30일 전까지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이 법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신분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 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20조의2(윤리협의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를 대표하고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하다.

[전문개정 2008.9.3.]

제20조의3(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4.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의4(윤리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회의의 공개 여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9.3.]
- 제20조의5(윤리협의회의 의사) 윤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7.27.]
- 제20조의6(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① 윤리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9.3.]
- 제20조의7(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① 윤리협의회에는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필요한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하다.

[전문개정 2008.9.3.]

제20조의8(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7.27.]

-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 2. 정부의 보조금
  -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9.3.]

제20조의10(윤리협의회의 규칙) 윤리협의회는 윤리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 제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 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 ② 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직퇴임일

-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 3. 수임일자
- 4. 위임인
- 5. 위임인의 연락처
- 6. 상대방
- 7. 사건번호
- 8. 사건명
-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 10. 수임사무의 요지
-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 ③ 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 변호사회가 제2항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 제50조·제 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 변호사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 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제출하여 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② 지방변호사회는 해당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정변호사로 선정하고, 그 선정의 근거를 제1항의 성명 및 사건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 상인 변호사
-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 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 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 ③ 하나의 사건을 둘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임한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1건으로 한다. <개정 2016.6.28.>
- ④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로 계산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4분의 1건으로 본다. <개정 2016.6.28.>
- ⑤ 인력과 물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둘 이상의 이름으로 수임한 사건의 수임사건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사건목록에 수임일자, 위임인,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의13(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법 제8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 232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 1. 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 2. 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 4. 중령 및 3급 군무원
- 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 6.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 8. 금융감독원의 3급 및 4급 직원 [본조신설 2011.10.26.]
- 제20조의14(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명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퇴직공직자의 성명
  - 2. 퇴직공직자의 주민등록번호
  - 3. 퇴직공직자의 퇴직 시 소속 기관과 직급
  - 4.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일
  - 5. 명단제출 책임변호사

[본조신설 2011.10.26.]

- 제20조의15(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89조의6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의 의뢰인 및 변호사 등 소속원에게 제공한 자문·고문 내역(서면의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요를 말한다)
  - 2. 퇴직공직자의 보수
  - 3. 업무내역서의 작성 책임변호사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고문 내역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이 경우「정부조직법」등의 개정에 따른 조직의 통합·분리,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처명이 바뀐 경우 변경 전후 부처는 동일한 부처로 본다.

[본조신설 2011.10.26.]

- 제21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판사,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법학 교수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 및 예비위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22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9.3.]
- 제23조(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예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 98조의5제3항에 따라 변호사 징계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 처분정보"라 한다)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생년월일·소속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 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명칭을 말한다]
  -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 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1. 영구제명·제명: 3년
  -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 3. 과태료: 6개월
  - 4. 견책: 3개월
  -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변호사 징계 내역을 두고,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변호사의 성명 및 사무실의 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5.]

- 제23조의3(징계정보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① 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이조 및 제23조의4에서 "신청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 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
  -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
  - ② 신청권자가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인적사항,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의 개요 및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선임의사확인서. 다만, 계약서, 선임계 또는 해당 변호사의 동의서 등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거나 징계정보의 열람· 등사에 대한 해당 변호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선임의사확인서를 갈음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3. 제1항제2호의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가 족관계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징계정보의 범위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정된 징계처분정보로 한다.

- 1. 영구제명·제명: 10년
- 2. 정직: 7년
- 3. 과태료: 5년
- 4. 견책: 3년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른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징계 정보의 제공신청대상 변호사가 사건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인 경우 등 열 람·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

[본조신설 2012.1.25.]

제23조의4(열람·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① 신청권자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직접 수령,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중 신청인 이 선택한 방법으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 등사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변호사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1.25.]

- 제24조(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전문개정 2008.9.3.]
- 제24조의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 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 제24조의4(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수행한다.

[본조신설 2007.7.27.]

- 제24조의5(결정서의 작성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②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호 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26조(업무정지의 효력발생)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은 해당 변호사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9.3.]

- 제27조(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이 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8.9.3.]

제28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제27261호, 2016.6.28.>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외국법 자문사법」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② 생략

## 개정 외국법까문사법 해설서

발 행 일 : 2016년 7월 일 인쇄

2016년 7월 일 발행

발 행 처 :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기획·편집 : 구상엽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노선균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신은영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고영노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문위원

김민수 법무부 국제법무과 법무관 유현욱 법무부 국제법무과 법무관

주 소: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전화 (02) 2110-3661

팩스 (02) 2110-0327

인 쇄 처 : 문중인쇄(주) TEL:(02) 503-7764~5